

전주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489 판결 [점유회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489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2. 29 선고 2014가단78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 선고 2016. 12. 1.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2. 29. 선고 2014가단78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들을 모두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오영표

판사이배근

판사김자림

별지